

대전지방법원 2023. 8. 9 선고 2022가단443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 고 A

피 고 B공제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현

담당변호사 이영진

변 론 종 결 2023. 7. 5.

판 결 선 고 2023. 8.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과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2. 5.부터,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12. 31.부터, 9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 31.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2010. 1. 1.부터 2012. 10.까지 피고 광주지부(이하 ‘광주지부’라고 한다) 사무국장으로 근무한 자이고, 피고는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교육공무원, 교원 및 사무직원 등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자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이다.

나.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1) C은 2011. 3. 14. 피고로부터 광주 서구 D 외 3필지 지상에 있는 B공제회 광주회관 1층 중 1,278㎡(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30,000,000원, 차임 월 5,301,900원, 관리비 월 7,546,500원, 임대차기간 2011. 4. 1.부터 2011. 12.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위 건물에서 안경점을 운영하였다.
- 2)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는 2010. 10. 29. C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14150호)에서, ‘C은 F 등과 연대하여 E에 687,988,829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강제조정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0. 11. 19. 그대로 확정되었다.
- 3) E는 위 강제조정결정에 기하여 2011. 4. 7. C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2억 원에 이를 때까지의 돈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광주지방법원 2011타채7994호, 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1. 4. 1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C과의 임대차 재계약

- 1) 피고가 2011. 9. 1. C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2011. 8. 31.까지(5개월분)의 연체 차임, 관리비

및 부가세 등 합계 74,850,280원이 지급되지 않고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2011. 10. 31.자로 해지한다는 통보를 발송하였고, 위 통보가 그 무렵 C에게 도달하였다. C은 원고에게 자신의 안경점에 투자할 사람을 찾아 달라 부탁하였고, 원고는 그 처형인 G를 C에게 소개하였다.

2) C은 2011. 11. 3. 피고에게, 2011. 11. 11.까지 연체 차임과 관리비를 완납할 테니 차임과 관리비를 하향 조절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재계약을 체결할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C에게 2011. 10. 31.까지의 연체 차임 및 관리비 87,399,550원, 2011. 11.분 차임 및 관리비 등 15,558,960원 합계 102,958,510원을 2011. 11. 11.까지 완납할 경우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통보하였다. G가 2011. 11. 9. 피고에게 1억 원을, C이 2011. 11. 10. 피고에게 2,958,510원을 각 송금하였고, 피고는 2011. 11. 11. G, C과 사이에, 피고가 G, C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130,000,000원, 차임 월 4,017,060원, 관리비 월 7,546,500원, 임대차기간 2011. 11. 11.부터 2012. 12. 31.로 정하여 임대하고, G는 129,999,000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C은 1,000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갖는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추심금 청구의 소

1) E는 2011. 12.경 피고를 상대로 추심금 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37470)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2. 5. 17. ‘피고는 E에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피고는 항소하였으나, 2012. 10. 23. 항소를 취하하여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피고는 2012. 10. 26. E에 위 판결에 따라 원금 130,000,000원과 지연손해금 21,227,397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에 대한 징계 및 원고의 확약서 작성

1) 피고는 위 추심금 청구의 소에서 원고가 송무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는 이유 등을 들어 2012. 11. 6.경 원고를 직위해제하였고, 원고에 대한 징계절차를 진행하였다.

2) 원고는 2013. 1. 23. '추심금 사건에서 피고가 추심금 전액을 E에 지급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의 배상과 관련하여 원고가 1억 3,000만 원을 피고에게 변제하되, 2013. 2. 5. 3,000만 원, 2013. 3.부터 2013. 12.까지 매월 100만 원(급여에서 공제), 2014. 1. 31.까지 9,000만 원을 지급한다. 만일 지체할 경우 연 9%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고, 6개월 이상 연체 시 미지급금 전부를 즉시 지급한다' 내용의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그에 따라 변제를 완료하였다.

3) 피고는 2013. 5. 28.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2010. 1. 1.부터 광주지부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임대 및 관리업무를 총괄하는 동안, 임대업장 추심금 청구 관련 송무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고, 임직원행동강령에 반하여 직무관련자에게 금전을 빌려준 사실이 있다. 원고의 위 행위는 성실의무위반, 품위유지위반,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위반, 임직원행동강령 위반 등에 해당하며, 사안의 경중으로 볼 때 엄중한 징계 처분이 불가피하나, 원고가 개전의 정을 보이고, 피고의 손실액(130천만 원) 배상과 관련하여 책임소재가 모호하고 법률적으로 쟁송의 소지가 있음에도 본인이 관리책임을 통감하여 추징금에 대한 지급을 진행 중인 점, 약 7개월간 직위해제 조치를 받고 있었던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를 정직 2월로 의결한다'는 징계결의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8, 10호증, 을 제1, 2, 3,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의 요지

1) 주위적 청구원인(부당이득반환청구) 1) 피고가 광주지부에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정본을 수령한 사실을 고지하였더라면, 원고는 C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처분행위를 금지시켰을 것이다. 피고는 위와 같은 고지의무를 해태한 피고 본사의 경영지원부 책임을 원고에게 전가할 목적으로 징계위원인 H(경영지원 이사), I(경영지원부 부장), J(경영전략실장), 원고의 상관인 K(광주지부 본부장)을 통하여 원고에게 면직, 불명예퇴직 등과 같은 공갈, 협박을 하였고, 원고로

하여금 확약서에 서명하고 130,000,000원을 변제하도록 강요하였는바, 이는 선량한 풍속 및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협박과 공갈 및 강요로 원고로부터 편취한 130,000,000원 및 그에 대한 이자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청구원인(구상금)

위 추심금은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돈이다. 피고가 E에 지급한 돈을 원고가 다시 피고에게 지급하였으므로, 그 지급의 순서를 달리하였을 뿐 원고가 E에 대위변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구상권이 발생한다.

나. 판단

1)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 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뿐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 및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를 포함하나, 이상의 각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단지 법률행위의 성립과정에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데에 불과한 때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하자나 의사의 흠결을 이유로 효력을 논의할 수는 있을지언정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9. 7. 23. 선고 96다21706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은 이 사건 확약서의 작성 과정 또는 작성 경위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인 방법이 사용된 것이라고 평가될 수 있을 뿐 위 확약서의 내용 자체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거나 이를 법률적으로 강제하거나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게 된 것이라고 할 수도 없고,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라도 할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가 하자 있는 의사표시로서 취소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무효로 되기

위하여는, 강박의 정도가 단순한 불법적 해악의 고지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를 느끼도록 하는 정도가 아니고, 의사표시자로 하여금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박탈한 상태에서 의사표시가 이루어져 단지 법률행위의 외형만이 만들어진 것에 불과한 정도이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38152 판결 참조).

갑 제4, 8,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직위해제된 상태에서 징계절차 중에 있었고, 피고는 K를 통하여 원고에게 확약서 작성을 요구하면서 수차례 확약서 내용을 바꾸었으며, 원고가 확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G와의 임대차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원고에게 중징계를 할 것처럼 원고에게 이야기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확약서에 표시된 의사표시가 그에게 가해진 강박으로 인하여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박탈당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구상금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확약서에 따라 1억 3,000만 원을 변제하였을 뿐이므로, 원고가 E에 피고를 대신하여 위 금원을 변제하였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백효민

1) 이 법원이 원고에게 청구원인을 명확하게 할 것을 명하였으나, 주위적으로 부당이득반환을, 예비적으로 구상금을 청구한다고 하고, 부당이득반환의 근거로 강박에 의하여 이 사건 확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주장만 반복하다가 2023. 6. 27.자 준비서면에서 확약서 작성이 선량한 풍속 및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주장을 하였는바, 이 사건 확약서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무효이거나 선량한 풍속 및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주장을 한 것으로 선행하여 판단한다.